

# 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정승래 · 오현수\* · 최윤정 · 장성록†

부경대학교 안전공학과 · \*한국항만연수원 부산연수원  
(2015. 11. 20. 접수 / 2016. 2. 1. 수정 / 2016. 2. 4. 채택)

## A Study on the Application Plan of the Basic Safety and Health Education for Service Industries

Seung Rae Jung · Hyunsoo Oh\* · Yoon-Jung Choi · Seong Rok Chang†

Department of Safety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Korea Port Training Institute, Busan

(Received November 20, 2015 / Revised February 1, 2016 / Accepted February 4, 2016)

**Abstract** : Recently, as Korean industrial structure is moving to the service job, the number of workers engaged in the service job is increasing slowly. According to the statistics by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nounced in June, 2013, the number of service job workers in Korea was 7,477,135 which accounted for 48.4% of total workers. The trend of this service job is expected to increase continuously in the future. According to the 2013 statistics by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number of industrial accidents victims of industrial accidents in the service job was 30,526 which was the biggest number among the entire businesses. The victims in the service job accounted for 33.2% among the total number of industrial accidents and represented more than those in the manufacture and construction industry. The service job had various works and employment patterns and most service jobs are petty and are small-sized establishments and it is difficult to try voluntarily to prevent the industrial accidents. However, Korea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as enacted in accordance with the construction and manufacture in which industrial accidents occurred frequently in the past. The support of the government for the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is focused on the construction and manufacture. Therefore, the current service job is placed on the blind spot of the safety management. Raising the safety awareness of workers through the safety education is the most important in order to prevent the industrial accidents of the service job with many conventional/repeated disasters such as the conduction by a simple mistake.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the features and accidents of the domestic service jobs through the literature survey and analyzed the institutional devices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the domestic service job, and the safety management cases of foreign service jobs and compared with domestic systems. Considering demands for the basic safety education for service job workers, a questionnaire was conducted targeting the service job workers and the execution plan of the basic safety & health education targeting the service job workers was carried out through the brainstorming of trainers of worker in the service job.

**Key Words** : service jobs, basic safety & health education, industrial accidents statistics, literature survey, questionnaire, brainstorming

### 1. 서론

최근 경기둔화 등으로 근로자가 서비스업종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2013년 기준 서비스업 근로자수는 약 748만 명으로 전체근로자수의 48.4%를 차지하였다<sup>1)</sup>. 또한,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서비스업 유입이 가속화 되고 있는 것도 재해율 증가의 원인이 된다. 서비스업 종사 장년 근로자의 재해비중이 2008년 35.2%에서 2013년 47.9%

로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업 종사 여성근로자의 재해 비중 또한 2008년 37.0%에서 2013년 44.7%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sup>2)</sup>. 이를 반영하듯 전체 재해자의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재해자 점유율 또한 2001년 23.8%에서 2013년 33.2%로 증가하였으며, 전체업종 중 가장 많은 재해자가 발생하였다<sup>1)</sup>. 이러한 서비스업의 재해발생형태는 대부분 단순 실수에 의한 넘어짐 사고 등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재래·반복형 재해가 다발하고 있다<sup>2)</sup>. 또한 서비스업의 경우 5인 미만 사업

† Corresponding Author : Seong Rok Chang, Tel : +82-51-629-6468, E-mail : srchang@pknu.ac.kr  
Department of Safety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45, Yongso-ro, Nam-Gu, Busan 48513, Korea

장이 (1,001,950개소) 서비스업 전체의 76.4%, 50인 미만 사업장이(1,293,364개소) 서비스업 전체의 98.6%를 차지할 만큼 소규모 사업장의 비중이 높다<sup>1)</sup>.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교육에 대한 법적 의무가 전혀 없으며, 50인 미만 서비스업 사업장의 종사자는 안전보건 교육 의무가 대부분 배제되어 있어 서비스업 사업장의 98.6%에 해당하는 종사자가 안전보건에 대한 기초지식 조차 제공받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서비스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서비스업의 특징 및 재해의 특징을 분석하고, 국내외의 서비스업 관련 안전관리제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서비스업 종사 근로자의 안전의식 및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요구도 조사, 서비스업 교육 전문가들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서비스업 종사자 대상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의 효과적인 실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효과적인 실시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Fig. 1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 1) 국내 서비스업의 특징 및 재해분석

국내 서비스업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서비스업 재해예방대책 추진계획 등의 보도자료 및 통계청의 산업별 비정규직 비율 자료, 선행연구 논문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서비스업 중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 타 업종과 비교한 서비스업의 휴·폐업률, 서비스업종의 다양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 2) 국내 서비스업 안전관리의 제도적 장치 분석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법 규정상의 제도적 장치를 분석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관련 사항들의 세부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 3) 외국과 국내의 서비스업 안전관리 제도의 비교·분석

외국 서비스업 안전관리 사례를 국내제도와 비교한 후 국내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위해 덴마크의 내부안전조직과 핀란드의 산업안전 카드제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의 유사한 제도와의 비교를 위해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에 관한 산업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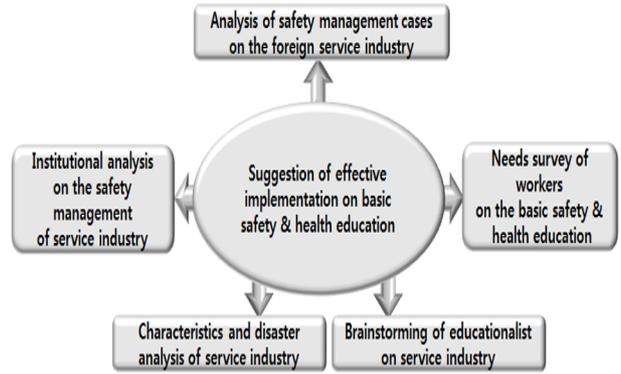


Fig. 1. Flow-chart of study.

보건법규의 내용도 함께 분석하였다.

### 4)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요구도 설문조사

서비스업 중 재해다발 5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요구도 조사”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 5) 서비스업 교육 분야 전문가들의 브레인스토밍

서비스업 각 직능단체 소속강사 및 안전보건공단 서비스업 서포터즈 강사 6명을 대상으로 서비스업 안전교육의 실시 현황과 문제점, 서비스업 법정 직무교육의 효율적인 실시 방안에 대하여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국내 서비스업의 현황 및 재해 분석

#### 3.1.1 국내 서비스업의 현황 분석

업무 및 직종, 고용형태가 다양한 서비스업은 대부분 영세하거나 소규모여서 재해예방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고, 재해예방을 위한 직접적인 기술지원도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sup>3)</sup>. 2013년 서비스업의 전체사업장 수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98.6%,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서비스업 전체의 67.2%를 차지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서 대부분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76.4%,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전체의 20.7%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업장의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다. 또한, 국세청의 2011년 개인사업자 폐업 현황에 따르면 2011년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82만9,669명으로 2010년보다 3%, 2만4,000여명 늘었다. 업종별로는 이·미용업, 학원 등 서비스 사업자가 17만9,83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소매업종(17만7,039명)과 음식점

(17만6,607명), 부동산 임대업(7만3,000명), 도매업(6만4,000명), 운수·창고·통신업(5만8,000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서비스업 자영업자는 2010년 5명중 1명꼴로 폐업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sup>4)</sup>.

서비스업은 타 업종 대비 휴·폐업 및 이직률이 높으며, 3년 이내 사업장 소멸율이 44%로 전체 폐업 사업장 중 서비스업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71.7%나 되었다<sup>5)</sup>. 뿐만 아니라 많은 근로자들이 비정규직(1년 이내 노동 이동률이 47%)으로 종사하고 있어 고용이 불안정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sup>6)</sup>.

3.1.2 국내 서비스업 재해의 현황 분석

2013년 고용노동부의 재해현황분석 중 Table 1을 살펴보면 기타의 산업인 서비스업은 과거 가장 많은 재해자가 발생했던 제조업보다 더 많은 재해자가 발생되어 2013년 전체산업 재해자의 33.2%가 서비스업에서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 Number of workers injured by industrial accidents (2009~2013)

(unit: person)

Industry	2009	2010	2011	2012	2013
Service	33,961 (34.7%)	33,170 (33.6%)	29,736 (31.9%)	29,159 (31.6%)	30,526 (33.2%)
Construction	20,998 (21.5%)	22,504 (22.8%)	22,782 (24.4%)	23,349 (25.3%)	23,600 (25.7%)
Manufacturing	32,997 (33.7%)	34,069 (35.5%)	32,294 (34.6%)	31,666 (34.3%)	29,432 (32.1%)

2013년 재해현황분석 중 서비스업의 업무상 질병자수는 전체산업의 34.3%로 제조업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건설업의 업무상 질병자수는 제조업, 서비스업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는 Table 2를 통해 알 수 있다.

Table 2. Number of workers affected by work-related diseases (2009~2013)

(unit: person)

Industry	2009	2010	2011	2012	2013
Service	3,104 (39.1%)	2,535 (36.3%)	2,270 (34.8%)	2,250 (33.4%)	2,325 (34.3%)
Construction	684 (8.6%)	564 (8.1%)	551 (8.5%)	635 (9.4%)	657 (9.68%)
Manufacturing	3,049 (38.4%)	2,976 (42.6%)	2,766 (42.5%)	3,072 (45.6%)	3,030 (44.7%)

Table 3에서는 2009~2013년까지 5년간의 근로손실일수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서비스업의 재해자수가 건설

Table 3. Lost work days by industrial accidents (2009~2013)  
(unit: 1,000days)

Industry	2009	2010	2011	2012	2013
Service	11,392 (22.0%)	11,865 (20.9%)	11,086 (20.2%)	11,197 (20.5%)	11,266 (21.4%)
Construction	14,132 (27.2%)	15,713 (27.7%)	15,724 (28.7%)	15,578 (28.6%)	15,694 (29.8%)
Manufacturing	18,704 (36.0%)	21,039 (37.1%)	20,529 (37.5%)	20,865 (38.3%)	18,596 (35.3%)

업, 제조업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반면 근로손실일수에서는 제조업이 가장 높았고, 건설업, 서비스업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서비스업의 재해는 근로손실일수가 낮은 경미한 재해가 다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4에서는 2013년 서비스업 재해정도별 재해자수를 나타내었다. 서비스업의 재해 중 치료기간 3개월 미만의 재해가 전체의 66.8%로 제조업 51.1%, 건설업 40.3% 보다 높게 나타났다. 제조업, 건설업과 비교하여 서비스업은 재해정도가 낮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Table 4. Number of industrial accidents according to injured degree (2013)

(unit: person)

Industry	Dead	Over 6months	3~6 months	1~3 months	1week~1month	4days~1week
Service	389 (1.3%)	4,181 (13.7%)	8,205 (26.9%)	13,708 (44.9%)	5,948 (19.5%)	744 (2.4%)
Construction	611 (2.6%)	4,951 (21.0%)	7,440 (31.5%)	7,294 (30.9%)	1,854 (7.9%)	354 (1.5%)
Manufacturing	618 (2.1%)	6,239 (21.2%)	11,887 (40.4%)	12,311 (41.8%)	2,309 (7.9%)	704 (2.4%)

Table 5에 나타난 2013년 서비스업 재해발생형태별 재해자수를 살펴보면 서비스업에서는 전도에 의한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건설업·제조업과 비교하여 추락, 낙하·비레, 협착 등의 재해는 적었으며 이상 온도접촉, 무리한 동작, 교통사고 등의 서비스업의 업종별 특징을 반영하는 재해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서비스업의 재해자수는 전체재해자의 33.2%를 차지하여 건설업 제조업보다 더 높은 재해율을 나타내었으며, 2013년 서비스업의 업무상 질병자수는 2,325명(34.3%)으로 제조업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서비스업은 재해자 수와 업무상 질병자 수가 높은 반면 근로손실일수는 제조업, 건설업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재해정도별 재해자수 중 치료기간 3개월

**Table 5.** Number of workers by type of industrial accidents (2013)

(unit: person, %)

Industry	Fall	Slip	Dropping, flying	Jamming accidents
Service	2,997 (8.8)	10,287 (30.3)	1,658 (4.9)	2,612 (7.7)
Construction	6,742 (32.1)	3,619 (17.2)	2,698 (12.9)	1,995 (9.5)
Manufacturing	2,909 (8.8)	4,208 (12.8)	3,132 (9.5)	10,883 (33.0)

Industry	Amputation	Contact of abnormal temperature	An impractical motion	Car accident
Other businesses	2,701 (7.95)	1,571 (4.6)	1,062 (3.1)	3,308 (9.7)
Construction	1,466 (7.0)	90 (0.3)	251 (1.2)	370 (1.8)
Manufacturing	2,206 (6.7)	525 (1.6)	564 (1.7)	665 (2.0)

미만의 재해자가 전체의 61.5%를 차지할 만큼 건설업 및 제조업과 비교하여 재해정도가 낮은 재해가 다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서비스업의 재해발생 형태에서는 전도에 의한 재해자가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의 다양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는 이상온도접촉, 무리한 동작, 교통사고 등의 비중이 건설업, 제조업과 비교하여 현저히 높은 특징을 나타내었다.

### 3.2 국내 서비스업 안전관리의 제도적 장치 분석

#### 3.2.1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체계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많이 존재한다.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 (1,001,950개소) 전체사업장의 76.4%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sup>7)</sup>.

#### 제2장 안전·보건 관리체제

-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 제14조 관리감독자의 선임
- 제15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 제16조 보건관리자의 선임
-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

#### 제3장 제20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제4장 제31조 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은 제외)

#### 제5장 제49조 안전·보건진단

#### 제5장 제50조 안전보건개선계획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

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은 제외),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개선계획 등의 법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다.

#### 3.2.2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성

서비스업의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사무직 종사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및 교육 서비스업은 안전·보건 관리체제에 관한 법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운영기준은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부터, 보건업, 건물 등의 종합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부터 적용대상이며 교육 서비스업은 제외대상이다. 또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은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안전관리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부터 적용대상이고 보건관리자는 제외대상이다. 또한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도소매 및 수리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경우 1명 이상 1,000명 이상의 경우 2명 이상 선임하여야 하며 보건관리자의 경우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0명 미만의 경우 1명 이상, 5,000명 이상의 경우 2명 이상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은 안전관리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의 경우 1명 이상, 500명 이상의 경우 2명을 선임하여야 하며 보건관리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의 경우 1명 이상 500명 이상 2,000명 미만의 경우 2명 이상, 2,000명 이상의 경우 2명 이상이지만 의사나 간호사 중 1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서비스업은 둘 다 제외대상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며, 그 밖의 서비스업은 50인 또는 100인 이상의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다시 말하면, 서비스업의 98.7%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제의 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지휘·감독하는 안전조직을 구성할 법적인 의무를 갖지 못하고 있다.

### 3.3 외국 서비스업 안전관리 사례조사와 국내 제도의 비교·분석

#### 3.3.1 덴마크의 내부안전조직

덴마크의 노동환경법(the Danish Working Environment Act)에서는 5인 이상의 노동자가 고용되어있는 기업은

양측(고용주, 노동자)을 대표하는 내부안전관리조직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덴마크의 내부안전조직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현장주임/감독관/근로자를 포함한 안전조직이 부서별로 구성되어 부서의 특성에 맞는 감독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의견이 회사정책에 적극 반영되고 있어 근로자의 자발적인 안전보건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sup>8,9)</sup>.

우리나라의 경우 노사 자율에 의한 안전보건을 유도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일부 한정된 사업장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의무화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협의사항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근로자의 건강관리,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등으로 부서별 안전조직을 구성하여 부서의 특성에 맞는 감독을 실시하는 덴마크의 내부안전조직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Table 6에서 자세히 나타내었다.

**3.3.2 핀란드의 산업안전 카드 제도**

핀란드의 산업안전 카드 제도는 안전보건을 위한 표준화된 훈련을 실시하고 시험을 통해 교육성과를 측정 한 후 산업안전 카드를 가지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안전보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의 확인과 사업장의 중복 훈련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표준화된 훈련 이후 시험을 통해 산업안전카드를 가지게 하는 제도로서 안전에 관한 기본지식 조차 제공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sup>10)</sup>.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법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안전보건교육 조차 제공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 또한 건설업에 한정되어 있고 보수교육이 없는 1회/4시간 교육으로 충분한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든 현실이다. 그나

Table 6. Comparison of national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mmittees and safety organization in Denmark

Classification	Main Contents	Note
Internal safety organization of Denma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 out of business-&gt; organised stipulating that the internal safety organization</li> <li>• Composed of the foreman, director and representatives of workers</li> <li>• Each department is organised must be internal safety organization</li> <li>• Check the whether workers are received the proper training and safety point, machine and equipment are operated well, raw materials are used badly</li> <li>• The role of safety participation in planning stage and consult with the owner before important deciding</li> </ul>	The effects of disaster reduction are appeared in most areas including trade, industry, stores, hospital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mmittee of Kor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ternal safety organization are installed and operated in harmfulness and danger construction in regular with more than 100 workers and more than 50 workers, and more than 12 billion won of construction expenses.</li> <li>• Composed of employees(representative of employees, director honor, employees) and user(representative of business, safety manager, health manager, a section chief) committee</li> <li>• Regular meetings every quarter</li> <li>• Deliberate and decide of matter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plan disaster prevention, the creation and change of safety·health management regulations, inspection and improvement of safety·health education and work environment</li> </ul>	Conducted in confined construction a day laborer

Table 7. Comparison of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based on safety and occupational safety card education system in Finland

Classification	Main Contents	Note
Industrial safety card system in Finla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afety and health educational achievement measuring through the examination after training → occupational safety card issuing system</li> <li>• Check of safety and health basic knowledge and avoidance of duplicate training of business</li> <li>• For workers who aren't given safety·health basic information</li> <li>• Safety cards are issued the subcontractor for expansion the safety·health knowledge.</li> <li>• Application of good practice in every work day → Changes of safety culture</li> <li>• Examination result of industrial safety card → Significant increase of safety knowledge among employees</li> </ul>	Decrease of accident ratio and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cos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mmittee of Kor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upport of basic safety·health knowledge for employees</li> <li>• Issue of complete card after 4 hours education</li> <li>• No re-education once after receiving education</li> <li>• Card issue without measuring education achievement</li> </ul>	Conducted in confined construction a day laborer

마 제조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기초안전보건교육 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성과 없이 이수카드를 발급하고 있어 자칫 시간만 허비하는 교육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모든 근로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준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Table 7에서 자세히 나타내었다.

### 3.4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요구도 조사

#### 3.4.1 일반사항

서비스업 종사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Table 8에서는 설문대상자들의 일반적 사항을 분석하였으며 서비스업 종사자 500명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57%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고,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87%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사에 근무한 경력을 살펴보면 55%가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Analysis of general contents of questionnaire respondents

Sex(%)		Type of employee(%)		Work experience(year)				
Male	Female	Regular	Temporary	<1	1-2	2-5	5-10	>10
43	57	13	87	55	28	10	5	2

#### 3.4.2 안전의식

작업이 안전한지를 묻는 질문에서 안전하다는 답변이 48.7%로 위험하다는 답변보다 높게 나타났다. 근무환경이 안전한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나쁘다는 의견이 36.4%로 좋다는 의견 28.3%보다 높게 나타났다.

작업안전수칙 준수 여부에서 지킨다는 의견이 62.8%로 가장 높았으며, 유해물질 안전수칙 준수 여부 및 기계 기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도 지킨다는 의견이 34.8%,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보호구 착용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착용한다는 의견이 20% 나타났으며, 착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는 보호구의 종류를 잘 모르거나, 회사에서 지급하니 않거나, 보호구가 필요하지 않는 작업이므로 라는 응답이 80%로 보호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착용상황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3.4.3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에 관한 설문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채용 시 교육을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서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78.4%가 받았다고 답한 반면, 5인 미

만 사업장 근로자는 56.8%가 받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정기교육 실시여부에서도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75.8%는 받았다고 답변했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56.8%는 받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로는 5인 이상과 5인 미만 모두 사업장의 관리자가 실시한다는 답변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직능단체 강사, 안전담당자 순이었다.

교육실시 주기를 묻는 질문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은 6개월 1회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월 1회 이상이 가장 높았으며, 안전교육 실시시간은 5인 이상과 5인 미만 사업장 모두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3.4.4 기초안전보건교육 요구도

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요구도에 관한 설문 또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상시근로자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근로자의 요구도를 묻는 질문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94.1%,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93.0%가 기초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기초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으로는 5인 이상과 5인 미만 모두 1시간~2시간 정도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실시방법은 5인 이상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모두 시청각과 강의식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었으며,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는 5인 이상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모두 안전 전문강사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서는 5인 이상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모두 작업안전수칙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작업관련성 질환, 안전의식 제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해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묻는 질문에서는 5인 이상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모두 안전교육의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하였으며, 그다음으로 시설의 안전화 및 보호구의 착용, 근로자의 안전의식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교육의 효과에 대한 질문은 교육실시 전과 교육실시 후로 구분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교육실시 전의 경우 안전교육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5인 이상 사업장 35.5%, 5인 미만 사업장 32.4%로 가장 높았으며, 교육 실시 후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서는 안전교육이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5인 이상과 5인 미만 모두 85% 이상으로 나타났다. 교육 실시 전과 비교하여 교

육 실시 후의 안전교육 효과에 관한 인식이 많이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5 서비스업 교육 전문가의 브레인스토밍

#### 3.5.1 서비스업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현황

현재 서비스업의 안전보건교육은 대한영양사협회,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서비스업 각 직능단체에 소속된 근로자등 위주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직능단체가 없는 업종이나 직능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들은 안전보건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각 직능단체에서도 직무교육 시간에 안전보건교육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형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전문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3.5.2 서비스업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따른 문제점

서비스업 대부분의 사업장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의 법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서비스업 종사 근로자를 위한 법적인 제도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현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직능단체 강사는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아닌 직능단체의 직무교육 강사로서 강사의 안전보건 전문성 부족이 문제가 된다. 또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관리자의 안전보건지식 또한 부족할 가능성이 크며, 서비스업은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으로 안전보건 교육장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다.

#### 3.5.3 서비스업 법정 직무교육의 효과적 실시방안

현재 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 종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나마 직능단체를 통한 안전교육이라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적용이 된다.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으나 서비스업 사업장 대부분이 영세하여 교육비를 국고로 대체하는데 있어 비용적인 문제가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 선임을 제도화하고, 관리책임자 안전교육을 법정교육에 포함시켜 교육받은 관리책임자가 자체적으로 사업장의 근로자를 교육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 안전보건공단과 민간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안

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 및 강사확보가 문제가 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법정 직무교육에 안전보건 강사의 직무교육을 제도화 하여 전문 강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서비스업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4. 결론

서비스업의 재해는 단순실수에 의한 넘어짐 등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재해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전도에 의한 재해자가 가장 많았으며, 건설업, 제조업과 비교하여 이상온도접촉, 무리한 동작, 교통사고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는 재해의 비중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업 사업장의 98.7%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서비스업 대부분의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개선계획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법규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인증, 자율안전 확인 제도 등 건설업 또는 제조업의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서비스업의 특성을 고려한 법적 안전관리제도는 전혀 없는 상태로 서비스업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현실에 처해있다. 서비스업종의 다양성을 고려한 업종별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기준을 제정하여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외국의 안전관리사례에서 살펴보았던 덴마크의 내부안전조직은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조직을 구성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회사 정책에 반영하였다. 핀란드의 안전카드 제도에서는 안전성과 측정 후 이수카드를 발급하는 제도를 통해 근로자 스스로 안전지식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제도 또한 법에 의한 규제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구할 수 있는 방안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후 성과측정에 대한 연구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업 사업장 종사자들의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요구도와 기초안전보건교육의 효과적인 실시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의 절반이상은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초안전교육 실시 강사는 안전전문강사, 교육방법은 강의식과 시청각교육을 병

행하며,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내용으로 작업안전수칙, 작업관련성질환, 안전의식 제고 등의 순으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재교육이 없는 1회성(3시간) 교육으로 형식적인 교육에 그칠 우려가 있으며, 3시간의 교육만으로 안전교육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제도화하고, 서비스업 관리책임자 안전교육을 법정교육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교육받은 관리책임자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정기적으로 교육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의 안전보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기초안전보건강사의 직무교육을 법정교육으로 제도화 하여야 한다. 서비스업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업종의 특성에 맞는 직무교육을 구분하여 실시하고, 교육기관은 직무교육을 이수한 강사를 채용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Business Demography Statistics Survey 2013”, 2013.
- 2)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Basic Safety and Health Training Implementation Plan in Services”, 2015.
- 3) Humanist, “Developed Countries, The Portion of Services is Higher”, 2011.
- 4) Internet news News 1, News, 2012.
- 5)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in the Service Jobs, 2013.
- 6) Statistics Korea, Irregular Employee Rate for Industry, 2013.
- 7)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2015.
- 8) J. D. Yu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Technical Standard Setting Process in EU, Korea Association of Machinery Industry, 1997.
- 9) S. H. Yang, J. H. Choi and W. M. Gal, “The major Foreign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Review”,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Autumn Scholarship, pp.1-8, 2002.
- 10)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Excellent Casebook for Industrial Disaster Reduction in EU”, 2012.